'98추계학술발표회논문집 한국원자력학회

원자력정보공개제도

함철훈, 양맹호, 윤성원 한국원자력연구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진동 150

요 약

미국과 같이 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나라는 지역주민 또는 환경단체들의 반원자력 주장을 수용하더라도 전체의 에너지 공급에는 큰 영향이 없지만, 마땅한 대체 에너지원이 거의 없이 전력원의 40% 이상을 원자력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경우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의 반원자력운동은 에너지 공급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원자력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의 원인은 여러 가지 사태가 복잡하게 얽혀 있겠으나, 무엇보다 개발초기단계부터 원자력에 대한 정보공개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안이하게 대처해온 측면이 크다고 본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원자력이 활성화 측면에서 프랑스 및 일본의 원자력 정보공개제도의 내용을 분석하고, 우리 나라의 정보공개 현황과 비교하면서 정보공개법의 제정내용을 참조하면서 원자력 공개제도의 방향을 제시하기로 한다.

ABSTRACT

The energy supply in the countries, which have abundant energy resources, may not be affected by accepting the assertion of anti-nuclear and environment groups. Anti-nuclear movements in the countries which have little energy resources may cause serious problem in securing energy supply. Especially, it is distinct in Korea because she heavily depends on nuclear energy in electricity supply(nuclear share in total electricity supply is about 40%). The cause of social trouble surrounding nuclear energy is being involved with various circumstances. However, it is very important that we are not aware of the importance of information access and prepared for such a situation from the early stage of nuclear energy's development. In those matter, this paper analyzes the contents of nuclear information access system in France and Japan which have dynamic nuclear development program and presents the direction of the nuclear access regime through comparing Korean status and refering to progresses of the regime.

I. 서 론

오늘날 인류가 맞이하고 있는 지구온난화 및 산성비 등과 같은 지구환경문제의 해결을 둘러싸고 국제사회는 기후변화협약을 통하여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단계적 감축을 결의하였다. 우리 나라도 머지않아 어떤 형태로든 이 협약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며, 자원빈국인 우리 나라의 대비책으로는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난화가스를 배출하지 아니하는 원자력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 이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여러 사례를 보면 기술적 측면에서 원자력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더라도 원자력시설 주변주민의 원자력에 대한 불신을 제거하고 그들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 원자력사업의 확대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원자력에 대한 일반인들의 불신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에서도 원자력에 대한 이해 부족 내지 정보공개를 소홀히 했던 점도 한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원자력계가

원자력에 대하여 아무리 자세한 설명을 하더라도 난해하고 거대한 원자력에 대하여 일반인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원자력이용·개발을 활성화함에 있어서는 원자력과 사회의 마찰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원자력에 대한 불안요인을 최대한 제거할 수 있는 정보공개체제의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원자력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가 높은 프랑스의 원자력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상황 및 원자력에 대한 반대 분위기가 비교적 강한 일본의 원자력 정보공개제도를 살펴보고, 우리 나라의 원자력 정보공개실태 및 공개방향을 제시하기로 한다.

II. 프랑스의 원자력정보공개1)

1. 개 요

1990년대에 들어와 미국 및 사회주의 노선을 표방하는 정당들이 집권한 유럽국가들을 중심으로 원전계획을 축소 내지 취소하는 움직임이 현저히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에너지수요의 감소와 화석연료가격의 인하에 따라 원전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감소한 측면도 있지만, 무엇보다 일부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한 뿌리깊은 반원자력운동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프랑스는 원자력 발전을 주요 전원으로 개발하여 1996년에는 총 전력량의 약 75%를 원자력발전으로 충당하였다. 다른 유럽 제국과는 달리 프랑스가 원전에 대하여 일반공중의 높은 지지를 얻고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 원자력을 추진하는 측에서 원자력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정보공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원자력 정보공개체제를 일찍부터 정비하였음에 기인한다고 본다.

2. 정보공개 관련 행정조직

가. DSIN

DSIN은 1973년에 설립된 기관으로서 원자력 안전규제업무를 주로 담당하지만, 그 설립정령(政令: Decree)에서 "일반공중에 대한 정보제공의무"가 안전규제기관의 역할임을 명문화하고 있다. DSIN에 의하면, DSIN의 정보제공의무는 주민에게 신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할 무한한 배려에 기초하며,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광범위한 토론을 환기시킬 능력을 보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나. CSSIN

1973년 설립된 CSSIN은 원자력시설의 안전문제를 담당하는 산업·우정·통신장관의 자문기관으로서 국민에게 원자력에 관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공개하는 것이 주임무이다. 체르노빌 원전사고 이후, 프랑스는 원자력사고 발생사실을 일반 국민에게 신속히 알릴 필요성을 인식하여 CSSIN은 1987년부터 원자력산업 관련정보의 평가도 수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CSSIN의 역할은 비상사태 발생시 이를 지휘하는 기관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정보전달조직의 정비·개선에 관한 권고를 행하는 자문기관에 불과하다.

3. 일상의 정보공개

가. Network을 통한 정보공개

프랑스에서는 비디오 디스크 시스템인 미니텔이 발달하여 있으며, 프랑스 탤레콤이 단말기(프랑스 국내의 보급총수 : 약 650만대)를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며, 이 미니텔에서는 원자력 관련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제공프로그램은 MAGNUC(DISN제공), TERLERAY(OPRI제공), ANDRA, EDF, COGEMA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원자력 관련 프로그램의 이용요금은 0.37프랑/분으로서, 다른 프로그램의 이용요금과 비교하면 최저 수준이다.

나. MAGNUC

MAGNUC³⁾은 DSIN이 1987년 CSSIN의 권고를 수용하여 운용을 개시한 세계 최초의 원

¹⁾ 이 부분은 "日本電力中央研究所, フランスにおける原子力情報の公開(No. P97909), 1998. 2를 주로 참조하였다.

²⁾ 이들에 대한 접속 건수는 ① EDF : 최대 13000건/월, 평균 8000건/월, 최소 5000건/월, ② MAGNUC : 3500건/월(평균), ③ TELERAY : 3000건/월(최대), ④ ANDRA : COGEMA보다 약간 많은 정도, ⑤ COGEMA : 225건/월 등이다.

자력정보제공 네트워크이다. MAGNUC은 안전에 관한 정보(제공 : DSIN), 건강에 관한 정보(제공 : OPRI), 환경중방사능측정결과(제공 : 원자력사업자 및 IPSN)를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시설의 운전상황 및 안전면에서 주목되는 사태(주보와 월보) 및 프랑스 전국 방사선 모티너링에 관한 최신 정보
- ② 원자력사업자(EDF, CEA, COGEMA, IPSN의 관측망)가 매월 갱신하는 원자력시설별 방사능측정결과
- ③ 국제원자력사상평가척도(INES) 소개와 이용방법
- ④ 원자력, 방사능, 안전 및 방사선방호에 관한 정의 및 요약자료 등이다.

MAGNUC은 프랑스 원자력정보공개의 핵심을 이루며, 이 정보는 일반주민 뿐만 아니라, 기자들이 기사작성시 참고자료로도 이용된다. 특히, MAGNUC의 "주간안전정보"는 일반주민의 접속이 가장 많은 프로그램이다.

다. Controle지

- 이 잡지는 DSIN이 1978년 이후 원자력안전정보지로서 발행한 "원자력안전공보"를 1994년 DSIN의 기관지인 "Controle"지로 개편한 것이다. Controle지는 3개 항목에 관한 안전기관의 2개월간 활동보고 및 1개 항목에 관한 안전기관 관련 주요 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원자력시설 관련항목에서는 시설별 및 시간 순으로 다음과 같은 정보가 제공된다.
 - ① 법률에 의한 행위: 건설허가, 핵연료교체허가, 임계허가, 출력상승허가, 방사성폐기물 방출허가, 운전개시허가
 - ② 원자력시설의 운전상태: INES 분류기준이 병기된 모든 사태
 - ③ 안전규제기관이 행한 사찰
 - ④ CLI의 회의 등, 원자력 안전에 관련성이 있는 여러 사건들

라. 지역정보제공위원회(CLI)

원자력시설 부지지역에는 각각 시설의 감시 및 정보 공개를 위하여 지역정보제공위원회 (CLI)가 설치되어 있다. CLI는 1981년 11월 15일 수상의 권고에 의하여 대형 발전시설을 대상으로 지방의회에 의하여 설치되었다. CLI의 설치목적은 대형발전시설(대부분은 원전)의 영향에 관한 조사 및 그 결과를 가장 적절한 수단으로 일반 공중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CLI는 지방의원(일반적으로 구성원의 약 ½), 환경단체 대표자, 노조대표, 각종 직능대표 및 행정대표 등으로 구성된다. CLI 내부의 정보교환 및 CLI와 정부와의 대화촉진을 위해 CLI 위원장(보통은 지방의회 의장)이 주관하는 전국대회가 1993년부터 연 1회 개최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일반공중에 대한 정보제공에 관한 의견표명 및 권고가 행해진다.

4. 원자력사고시 정보공개

TMI 원전사고, 체르노빌 원전사고를 계기로 원자력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정보 제공문제가 프랑스에서도 일반주민의 최대 관심사가 되었다. 이에 따라 프랑스는 지진, 강풍, 눈사태 등의 자연현상에 대하여 이전부터 도입하여 왔던 방식을 1987년 이후 원자력시설에서도 이를 참고하여 trouble을 1(이례적 운전사고) 내지 6(대형사고)으로 분류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한편, IAEA는 1991년 프랑스의 이러한 제도를 참고하여 국제원자력사고척도(INES)를 도입하였다. 프랑스는 1993년 INES를 채택하였고, 1994년 4월부터 INES에 의한 사고분류가 행해졌다. 그리고 level 1 이상의 모든 사태는 자동적으로 MAGNUC에 게재

³⁾ MAGNUC은 체르노빌 원전사고 이후에 구축되어 25000명 이상의 접속이 있었던 data bank를 계속 하여 개설하고 있다.

되며, level 2 이상의 위기상황에서는 담당정보센터가 모든 전달매체를 통하여 일반공중에게 정보를 전달한다.

5. 언론에 대한 이해촉진활동

프랑스에서는 공개된 정보를 해석하여 일반주민이 알기 쉽도록 사용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기 때문에 언론에 대한 대응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따라서, 일반주민에 대하여 원자력 안전활동에 대한 정보제공은 여론의 가교역할을 하는 언론과의 관계를 전제하고 있다. DSIN은 약 10년 전부터 DSIN의 활동을 소개하는 연차기자회견, 언론성명, 전국및 지방 언론과의 직접적·정기적 대화를 통한 정보교환을 행하고 있다. 한편, 원자력사업자인 EDF 및 COGEMA는 자료 발행, net-server 운용, 방문자의 서명, 협의회 개최 등 광범위한 이해촉진활동을 행하고 있다.

6. 원자력사업자의 홍보활동

가. EDF의 원자력홍보

EDF는 1992년부터 신문 등과 같은 출판물 이외에 원자력홍보의 유력한 수단으로서 TV 방송을 이용한 광고캠페인을 활용하고 있다. TV 광고캠페인이 시작되기까지는 프랑스인의 60%가 프랑스의 전력의 대부분이 원자력에 의한 것임을 몰랐다는 것이다. 4 EDF의 TV 광고캠페인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① "프랑스 전력의 75%는 원자력발전으로 충당되고 있다"라는 단순하고도 명료한 메시지의 전달이다.
- ② 일반국민들로 하여금 원자력발전에 관심을 갖도록 하고, 프랑스에 있어서 원자력의 중요성을 일반국민에게 인식시킨다.
- ③ 원전의 안전성에 관하여 EDF는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업자라는 강렬한 인상을 일반국민에게 부각시킨다.

한편, EDF는 TV 광고갬페인 이외에 출판물에 의한 광고캠페인에 의하여 원자력홍보의 상승효과를 추구하고 있다. TV 광고는 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감각적 측면에 호소하는 것 이나, 신문광고와 같은 출판물에 의한 광고는 주로 고등교육을 받은 층을 대상으로 논리적 근거나 또는 사실적 설명을 통하여 원자력 발전의 이 점을 홍보하는 것이다.

나. COGEMA의 원자력홍보

1990년 COGEMA는 일반시민에 대한 홍보를 위하여 TV 광고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그이전에 COGEMA는 주로 여론주도계층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하였으나 ① 일반공중에게 COGEMA의 이미지를 형성한다, ② 프랑스 원자력 산업계에서 COGEMA를 핵심적 존재로부각시킨다, ③ 일반공중과 신뢰성이 높은 의사소통 수단을 확립한다는 등의 이유로 TV 광고캠페인을 개시하기로 하였다.

7. 학교교육 속의 원자력

프랑스의 학교 교과과정에서는 원자력에 관한 교육이 공식적으로 수행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에서는 일반적으로 학교교과 과정에 주변지역의 산업, 공장방문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어 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원자력시설의 방문이 행해지고 있다. 한편, 교사들에 의하여 구성되는 "독립위원회"가 원자력을 포함한 에너지문제 전반에 관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교사의 희망이 있으면 이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학생들에게 원자력에 관한 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III. 일본의 원자력 정보공개

1. 개 요

원자력에 대한 반대 분위기가 비교적 강한 일본은 원자력에 대한 연구·개발을 추진함에 있어서 일반국민의 원자력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향상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4) 1993}년의 여론조사결과, 일반국민의 65% 이상이 프랑스의 총발전량 중 원전의 기여도가 가장 높다는 것을 안다는 사실이 확인됨으로써 EDF의 홍보전략은 성공하였음이 판명되었다.

전부터 정보공개를 추진하여 왔다. 특히, 일본은 동력로·핵연료동연(이하 "동연"이라 한다)의 "몬쥬사고"이후 정보공개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7년 3월 발생된 동연의 동해사업소 재처리시설 아스팔트고화처리시설의 화재폭발사고가 발생시 동연측의 사고발생보고 지연 및 허위보고사실이 알려져 원자력에 대한 사회의 불신이 고조됨으로써 원자력에 대한 정보공개를 사회적·제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동연은 정보공개지침을 대폭수정하였다.

2. 정보공개지침의 기본방향

동연의 정보공개지침은 일본 정부가 추진한 정보공개법의 제정에 앞서 원자력 분야의 특수법인으로서 최초로 제정한 것으로서 이 지침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5)

- ① 핵비확산, 핵물질방호 등 일부 정보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 ② 노하우(know-how)와 관련된 비공개정보는 작성일로부터 일정기간 경과 후에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 ③ 공개청구를 받아 공개하는 수동적 정보공개 뿐만 아니라, 자주적 내지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능동적 정보공개를 목표한다.
- ④ 기술성과보고서의 목록을 작성·공표하고 일반인에게 이용편의를 도모한다.
- 3. 정보공개지침의 주요내용

동연은 원자력기본법에 의한 설립목적에 따라 원자력의 개발 및 이용을 촉진함에 있어서 국민의 이해 및 신뢰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동연의 연구개발성과 등을 공개하고 이를 위 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6)

가. 정 의

- ① 이 지침에서 "정보"라 함은 동연의 자료를 말한다. "동연자료"라 함은 동연의 임·직원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또는 취득한 문서, 도면 사진, 필름, 자기테이프 등으로서 동연의임·직원이 조직적으로 사용한 것으로서 동연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일반인이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는 것 또는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서 열람에 제공하는 것을 제외한다.
- ② 이 지침에서 "공개"라 함은 동연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또는 복사본을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나. 공개원칙

- ① 공개청구에 관련된 동연자료에 별표에서 정한 비공개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는 자료를 공개한다
- ② 공개청구에 관련된 동연자료의 일부에 별표에 정한 비공개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 당해 부분과 이를 제외한 부분과를 용이하게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당해 부분을 제외한 부분마다 공개한다.
- ③ 별표 중 노하우정보에 정한 비공개정보를 포함한 동연자료는 당해 자료작성 후 일정기 간을 경과한 후에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 공익상 이유에 의한 공개

공개청구에 관련된 동연자료에 별표에 정한 비공개정보가 포함된 경우라도 당해 동연자료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이익에 우월한 공익상의 이유가 있다고 특히 이사장이 인정한 때에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

라. 공개청구에 대한 조치

- ① 공개청구에 관련된 동연자료를 공개할 때에는 공개청구자에 대하여 공개를 결정한 취지, 공개시기, 장소, 수수료 등에 관하여 서면 등으로 통지한다
- ② 공개청구에 관련된 동연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개청구자에 대하여 이유를

⁵⁾ http://www.pnc.go.jp/news/npuress/PS97/PE970630/PE97063001.html ; 動力爐・核燃料開發事業團, 情報公開指針(ガイドライン)運營開始について、1997.6.30.

⁶⁾ http://www.pnc.go.jp/news/npuress/PS97/PE970630/01.html

부기하여 그 취지를 서면 등으로 통지한다.

마. 공개결정 등의 제한

- ① 동연자료에 대한 공개청구가 있었던 경우에는 공개청구가 있은 후 30일 이내에 공개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하 "공개결정 등"이라 한다)을 행하고, 공개청구자에 대하여 그 취지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 ② 전항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동연의 사무처리상 곤란 및 기타 정당한 이유에 의하여 동항에 규정하는 기간 내에 공개결정 등을 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30일을 한도로이를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공개청구자에 대하여 동항의 기간 내에 공개결정 등이불가능한 이유 및 연장기간을 서면 등으로 통지한다.

바. 제3자 보호를 위한 절차

공개청구에 관련된 동연자료에 동연 및 공개청구자 이외의 제3자에 관련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동연은 공개결정을 함에 있어서 당해 제3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IV. 우리 나라의 원자력 정보공개

우리 나라는 1980년대 후반부터 원자력은 위험하다는 일부 환경단체의 주장과 언론의 보도로 인하여 원자력에 대한 실상을 일반국민에게 정확히 알릴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따라 한국원자력연구소 및 한국전력공사 등 원자력 관계기관들은 원자력의 중요성과 진상을 알리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아직까지 원자력에 대한 국민들의 충분한 공감을 형성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나 원자력에 대한 신뢰를 획득하기 위하여 원자력에 대한 정보공개가가장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1989년 이후 원전과 관련한 정보공개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7)

첫째, 원자력공개지침의 제정, 언론, 공개지, 전화, 컴퓨터통신, 시설공개 등으로 확대하여 온 원자력공개는 국민들이 보다 손쉽고 편리하게 원전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개범위도 법적으로 위배되거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산업비밀에 속하는 사항 이외에는 모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특히, 원전의 고장·사고에 대하여는 국제원자력기구에서 규정한 "원전사고·고장등급 분류기준"에 따라 이를 즉시 발표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1997년에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공개제도를 더욱 확대하는 한편, 특히 주민들이 실 감할 수 있는 공개제도를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예를 들면, 원전운영 관련 정보의 공개 확대를 위하여 영광원전에서 1996년 12월부터 시행하여 온 원전운영정보시스템을 1997년에 는 울진원전지역에, 12월에는 월성원전지역에도 설치하여 개통하였다. 이 운영정보시스템은 인터넷과 원전주컴퓨터를 온라인화 하여 원전운전현황, 방사선관리, 언론보도자료 등을 실시 간대에 제공하여 원전운영정보의 공유화를 도모하고 있다.

셋째, 원전주변 기형가축의 원인규명을 위한 역학적 데이터 베이스의 구축이다. 그동안 원전주변에서 기형가축이 발생하면 원전의 방사선에 이한 것이라는 의혹과 민원이 제기되어온 것을 감안하여 이를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하여 원전지역과 대조지역》의 가축에 대한 각종 정보를 데이터 베이스화 하는데 착수하였다. 이 사업은 1997년 7월에 착수하였으며, 1999년 12월에 완료될 예정이다.

넷째, 정보공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론매체를 통한 공개이기 때문에 원전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는 고장정지는 물론 사소한 사건도 즉시 언론에 통보하고 산업자원부 및 과학기술부 출입기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중요현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였다.

⁷⁾ 산업자원부·한국전력공사, 원자력발전백서(1998), 254 - 256면.

⁸⁾ 이는 4개 원전지역과 충남 서천지역을 대상으로 가축에 대한 가축 사육두수, 가구수, 기형발생률, 사육환경 등을 지속적으로 추적·관리함으로써 기형가축의 발생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여 주민들 의 원자력에 대한 불신과 불안을 해소시키려는 사업이다.

별표 1. 공개원칙관계9)

	로파 1. 이세 면역단계약
구 분	비 공 개 정 보
개 인 정 보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이 식별되거나 또는 다른 정보와의 조합함으로써 식별될수 있는 것. 다만, 다음과 같은 정보는 제외한다. ① 관행상 알려져 있는 정보 또는 공개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정보 ② 성명 및 기타 특정개인이 식별될 수 있는 정보의 부분을 제외함으로써 공개하더라도 본호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이익이 침해될 위험이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③ 동연의 직무정보에 포함되는 결재권을 가진 관리직의 직위 및 기타 지위에 관한 정보 ④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하는 것이 보다 필요하다고 인정된 정보
노하우 정 보	동연의 연구개발성과 등에 관한 정보 또는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 개인의 당해 사업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과 같은 것. 다만, 동연 또는 당해 법인, 개인의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생명, 신체 또는 건강상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 또는 생활의 침해로부터 보호하기위하여 공개하는 것이 보다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제외한다. ① 공개함으로써 동연 또는 당해 법인, 개인의 경쟁상의 지위 , 재산권 및 기타 정당한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것. ② 동연으로부터의 요청을 받아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약속에 따라 임의로 제외된 것으로서 법인, 개인에 있어서 통상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되어있는 것 및 기타 당해 약속의체결이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것
핵비확 산정보	 ① 농축시설, 재처리시설 또는 플루토늄연료시설 등의 설계, 건설, 운전 또는 보수에 관련된 정보로서 다음과 같은 것 ⑦ 공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함에 족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④ 동연과 외국 또는 국제기관과의 신뢰관계가 손상될 위험이 있다고 인정함에 족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② 외국 또는 국제기관과의 교섭상 동연이 불이익을 입을 위험이 있다고 인정함에 족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핵물질 방 호 정 보	공개함으로써 범죄예방, 공공의 안전 및 질서유지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믿을만 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핵물질방호, 방해파괴활동방지에 관한 정보
의 ² 전 ³ 전 ⁴ 전 ⁴ 모	동연 내부 또는 관계기관과의 검토 또는 협의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에 의하여 특히 다음과 같은 우려가 있는 것 ① 솔직한 의견교환이 손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것 ② 동연업무 수행에 오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을 것 ③ 특정인에게 이익을 부여하거나 또는 불이익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것 다만, 중간보고로서 공개한 것은 제외한다. 감사, 쟁송, 교섭, 계약, 조사, 인사관리, 사업경영 및 기타 동연의 업무 또는 사업에 관한
변원 관 본 전 관 정	점사, 성공, 교급, 세국, 도사, 인사된다, 사급성공 및 기다 공단기 급단 모든 사업에 된인 정보에 있어서 오로지 동연 내부의 일상적 관리운영을 위한 것 또는 공개함으로써 당해 업무 또는 사업의 성질상 당해 업무 또는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것

V. 결론 및 정보공개방향

프랑스 및 일본의 정보공개체제에 대응한 우리 나라의 정보공개활동을 보면, 전반적으로는 이들 국가들과 유사한 공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은 정보공개가 조직적·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힘든 것 같다. 상기한 바와 같이 프랑스는 가장 모범적인 정보공개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이지만 상이한 역사적 배경과 문화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프랑스의 정보공개제도를 그대로 도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편, 일본의 원자력 정보공개지침도 동연의 재처리시설 사고를 계기로 정비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정보공개지침이우리 나라의 사정에 반드시 적합하다고는 볼 수 없다. 다만, 양국의 정보공개제도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몇가지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고 본다.

첫째, 우리 나라에서는 1996년 12월 31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5242호)"이 제정·공포됨으로써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되었다. 따라서, 원자력 정보공개지침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공개대상이 될 "정보"의 개념, 비공개대

⁹⁾ 자료: http://www.pnc.go.jp/news/npuress/PS97/PE970630/betu.html.

상정보의 범위 및 정보공개절차 등을 전제로 원자력의 특수한 사정을 가미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공개지침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10) 이와 관련하여 일본 동연이 마련한 비공개정보의 분류는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프랑스가 미니텔을 이용하여 정보공개를 추진하는 바와 같이, 원자력 정보공개와 관련한 정보매체로서는 지역민방 및 케이블 TV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 하면, 원자력에 대한 정보는 그 범위가 매우 넓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반주민으로서는 아무리 쉬운 정보라도 이를 논리적으로 납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재미있는 TV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주민의 관심을 적극 유도하여 할 것이다.

셋째, 원자력 정보공개에 있어서 궁극적 목표는 원자력의 안전성에 대한 주민의 신뢰형성에 있다. 현재 우리 나라의 경우에 있어서 원자력 정보공개업무는 원자력사업자인 한국전력 공사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의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업무편중에 따른 왜곡현상을 시정하기 위하여 원자력 이용·개발에 객관적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3기관의 정보공개활동 범위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¹⁰⁾ 총무처, 정보공개제도 운영요령(정보공개제도 자료 3), 1997 참조.